

한일 무역 분쟁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명령

감지혜(성신여자대학교 사회교육과 조교수)

논문요약

2019년 7월 일본 정부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의 핵심 소재인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에 대한 한국으로의 수출을 일반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 대상으로 변경하였다. 이는 한국의 일본에 대한 수출규제 및 국내의 일본 상품 불매 운동으로 이어져서 한일 무역 분쟁을 촉발하였다. 본 연구는 한일 무역 분쟁의 배경인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소송 판례를 중심으로 향후 재차 발생할 수 있는 분쟁 가능성에 대해 분석하고 무역 및 주가지수 통계를 활용하여 실제 한일 무역 분쟁이 양국의 경제에 미친 영향을 살펴 보았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경우와 같이 개별 재판부가 대법원의 판례를 확일적으로 따르기보다는 국가면제에 대한 상반된 견해에 따라 각기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일본의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수입액 감소는 한국의 반도체 수출액 감소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나 양국의 증권시장에서 주가 단기 하락을 가져와 투자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일 양국 간 경제·정치·외교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의 국가면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와 대법원 판례에 근거한 하급법원의 일관적인 판결이 요구되는 바이다.

주제어: 한일 무역 분쟁,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화이트리스트, 반도체 관련 3개 품목 수출규제, 한일 청구권 협정

I. 서론

일본은 2019년 8월 2일에 백색국가(ホワイト国, 수출절차 우대국가)제도를 캐치올제도(キャッチオール規制)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국가안보상의 이유로 기존의 백색국가 27개국¹⁾ 중 유일하게 한국에 대한 수출지역 구분을 Group A(グループA)가 아닌 Group B(グループB)로 격하하는 내각명령을 승인하고 8월 28일부터 시행하였다.²⁾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은 캐치올제도로의 전환에 앞서 2019년 7월 1일에 ‘한일 간 신뢰 관계의 심각한 훼손’³⁾을 근거로 한국 수출관리 운용에 대한 재평가(韓民国向け輸出管理の運用の見直しについて)를 공고하고 당해 7월 4일부터 한국의 주요 수출상품 중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 핵심 소재인 불화수소(フッ化水素, hydrogen fluoride, HS281111), 포토레지스트(レジスト, photoresists, HS370790), 플루오린 폴리이미드(フッ化ポリイミド, fluorinated polyimides, HS391190) 등에 대한 수출을 일반포괄허가(一般包括許可)에서 개별허가(個別許可) 대상으로 변경하였다. 그에 따라서 전략물자 수출에 있어서 허가 승인 처리기간이 1주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증가하였고 허가 심의에 요구되는 서류는 대략 2종에서 3-9종으로 증가하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업체의 재료 확보에 대한 우려가 전망되었다.⁴⁾

일본의 수출제재에 대응하여 2019년 7월 12일 제20대 국회에서는 설훈의원 등 28인이 「자유무역과 한·일 관계 증진에 반하는 일본 아베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의안번호: 2021457)을 발의하였다. 이어서 7월 15일에는 이수혁의원 등 45인의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등

1) 기존의 백색국가는 (유럽 21개국) 아일랜드, 영국,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그리스, 스위스, 스웨덴, 스페인, 체코, 덴마크, 독일, 노르웨이, 헝가리, 핀란드, 프랑스, 불가리아, 벨기에, 폴란드, 포르투갈, 룩셈부르크 (아메리카 3개국) 미국, 캐나다, 아르헨티나, (오세아니아 2개국) 호주, 뉴질랜드, (아시아 1개국) 대한민국 등 총 27개국을 포함한다. 한국은 2004년부터 백색국가에 포함되었으며 백색국가 지정 후 취소는 전례가 없었다.

2)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外国為替及び外国貿易法, 昭和24年法律第228号)에 근거하는 『수출무역관리 시행령』(정령378호, 輸出貿易管理令, 昭和24年政令第378号) 제4조의 [별표 제3]에 명시된 수출우대국에서 한국을 제외하였다.

3) 일본경제산업성, “日韓間の信頼関係が著しく損なわれたと言わざるを得ない状況です.”, 2019.

4) 日本経済産業省, “日本産半導体製造装置の輸入は減少、半導体主要材料2品目は増加(韓国).”, 2019.

관한 결의안」(의안번호: 2021474), 김종훈의원 등 10인의 「일본 정부의 강제징용 사과와 경제보복 중단 촉구 결의안」(의안번호: 2021477), 김재경의원 등 24인의 「일본의 對 대한민국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수출규제 보복조치에 대한 철회 촉구 결의안」(의안번호: 2021480) 등이 발의되었다. 이상 5건의 발의안은 당해 7월 17일 국회(임시회) 제5차 공청회와 7월 22일 제6차 전체회의에 일괄 상정되어 개별적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는 대신에 7월 23일 외교통일위원장이 제안한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의안번호: 2021601)을 위원회안 가결 후 8월 2일 국회에서 제1차 심의를 통해서 종합하여 이인영·나경원·오신환의원 등 263인의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원안가결되었다⁵⁾.

이와 같이 제20대 국회가 제시한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의 즉각적인 철회와 책임있는 태도, 한국 정부의 적극적 대응 및 양국 정부의 외교적 노력에 대한 촉구로 인해 한국 정부는 9월 11일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인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터,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3개 품목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한일 양자협약의 요청서에 적시한 최혜국대우 의무, 수출제한 설정·유지 금지 의무, 일관적·공정적·합리적으로 운영 의무 등에 대한 위반으로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에 제소하였다. 9월 18일에는 일본의 수출제재와 대등하게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154호) 제10조와 관련하여 [별표 6] 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에서 일본을 ‘가의1 지역’에서 ‘가의2 지역’으로 일부개정·시행하였다.⁶⁾ 2023년 3월 23일 일본 정부가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터,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에 대한 수출규제를 해제하고 이전과 동일하게 개별허가에서 포괄허가로 다시 변경함에 따라서 한국 정부도 당일 세계무역기구 제소를 철회하고 4월 24일에는 일본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위한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을 공포·시행하여 일본을 다시 전략물자 수출우대지역인 ‘가 지역’(현재 가의 1)으로 복원하였다.⁷⁾ 이어서 6월 27일 일본 정부가

5) 상세한 내용은 의안정보시스템 <https://likms.assembly.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6) 산업통상자원부, “제26차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 전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154호, 2019.

7) 산업통상자원부, “제31차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 전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74호, 2023.

한국을 Group A(グループA)로 재지정하는 「수출무역관리시행령」 개정안을 각 의에서 의결함에 따라서 한일 무역 분쟁이 공식적으로 종결되었다.⁸⁾ 그러나 한일 무역 분쟁의 시발점이었던 일제 강제징용 및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강제성 인정, 손해배상청구 등 양국 간 역사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있으므로 향후 무역 분쟁의 재발이 예상된다.

일본군 강제징용 및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한 기존의 선행연구는 대부분 비엔나협약 제31조에 근거한 한일 청구권 협정의 해석과 관련된 연구로 제한적이며 특히 2019년 한일 무역 분쟁과 연계하여 양적 자료를 활용해서 분석한 연구는 극히 드물다.⁹⁾ 이에 본 연구는 학제간 연구로서 보다 다각적인 측면에서 한국과 일본의 역사 현안인 일제 강제징용 및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주요 쟁점을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판례 분석을 통해 살펴보고 2019년 한일 무역 분쟁의 경제적 영향에 대하여 세계무역기구의 국제수지 자료(UN Comtrade)와 국내의 증권시장 주가지수 통계를 활용해서 실증적으로 분석한 후 향후 지향되는 한일 관계 구축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일제 강제징용과 일본군 위안부

1.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청구소송 관련 주요 판례 분석

일본의 한국에 대한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수출규제

-
- 8) 강감찬, “한-일 수출규제 현안 관련”,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3; 산업통상자원부, “제31차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 전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74호, 2023; 日本經濟産業省, “韓国向け輸出管理の運用の見直し.”, 2023.
- 9) 강병근, “국제법적 관점에서 본 일제강제징용 배상판결의 주요쟁점에 관한 연구.” 『저스티스』 제143호, 2014, pp.234~268; 강은현, “일제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민사소송법 쟁점의 검토 - 2013다 61381 전원합의체 판결 및 이후 집행절차의 개략 -.” 『민사소송』 제26권 제1호, 2022, pp. 201~253; 서하림, “일제 강제징용 배상에 관한 대법원 판결과 한일 청구권 협정의 해석 -조약의 해석 원칙을 중심으로-.” 『법학논집』 제29권 제2호, 2024, pp. 377~405; 정구태·김어진,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와 소멸시효-대법원 2018.10.30. 선고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을 계기로-.” 『법학논총』 제25권 제3호, 2018, pp. 249~268.

에 따라서 양국 간 무역분쟁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지속되었다. 주요 외신은 이러한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제재가 한국 대법원이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4명(여운택·신천수·이춘식·김규수)과 2명(양금덕·김성주)이 각각 일본 전범 기업인 신일철주금(新日鐵住金, 전 신일본제철회사 新日本製鐵公司, 현 일본제철 日本製鐵 Nippon Steel)¹⁰⁾과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三菱重工グループは, Mitsubishi Heavy Industries (MHI) Group)¹¹⁾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2018년 10월 30일과 11월 29일에 상고를 기각한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분석하였다.¹²⁾

한국의 대법원은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가 신일철주금¹³⁾과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¹⁴⁾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 각각 2018년 10월 30일

-
- 10)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공2018하, 231기]을 일컫는다. 관련 판결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4. 3. 선고 2005가합1647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 7. 16. 선고 2008나49129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6862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7. 10. 선고 2012나44947 판결 등이 있다.
- 11)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3다67587 판결 [손해배상(기)등]과 2015다45420 판결 [손해배상(기)등]을 의미한다. 관련 판결로는 부산지방법원 2007. 2. 2. 선고 2000가합7960 판결, 부산고등법원 2009. 2. 3. 선고 2007나4288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22549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3. 7. 30. 선고 2012나4497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3. 11. 1. 선고 2012가합10852, 광주고등법원 2015. 6. 24. 선고 2013나5441 판결 등이 있다.
- 12) “South Korea and Japan trade dispute could lead to ‘dire consequences,’ official warns.” *ABC News* 2019. 7. 18; “South Korea and Japan’s feud explained.” *BBC* 2019. 12. 1; “South Korea, Japan Strike Calmer Note After Months of Tension.” *Bloomberg* 2019. 8. 14; “South Korea-Japan trade fight risks ‘further escalation.’” *CNBC* 2019. 7. 17; “Japanese trade restrictions place clamps on South Korean economy.” *NHK* 2019. 7. 2; “A trade dispute between Japan and South Korea has Trumpian echoes.” *The Economist* 2019. 7. 18; “Seoul lobbies wartime forced labour victims to drop Japan claims.” *Financial Times* 2019. 11. 28.
- 13)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공2018하, 231기]을 일컫는다. 관련 판결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4. 3. 선고 2005가합1647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 7. 16. 선고 2008나49129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6862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7. 10. 선고 2012나44947판결 등이 있다.
- 14)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3다67587 판결 [손해배상(기)등]과 2015다45420 판결 [손해배상(기)등]을 의미한다. 관련 판결로는 부산지방법원 2007. 2. 2. 선고 2000가합7960 판결, 부산고등법원 2009. 2. 3. 선고 2007나4288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22549

과 11월 29일에 승소를 확정하였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1965년 6월 22일에 체결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財産及び請求権に関する問題の解決並びに経済協力に関する日本国と大韓民国との間の協定; 조약 제172호, 이하 청구권협정)¹⁵⁾이 일본의 불법적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賠償)을 청구하기 위한 협상이 아니라 1951년 9월 8일에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San Francisco Peace Treaty, サンフランシスコ講和条約)¹⁶⁾ 제4조에 근거한 ‘한일 양국 간의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관계를 정치적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따라서 청구권협정 제1조에 명시된 일본 정부가 한국에 경제협력자금으로 지급한 무상자금 천팔십억 엔(3억 미국달러), 유상재정차관자금¹⁷⁾ 칠백이십억 엔(2억 미국달러), 상업차관 천팔십억 엔(3억 달러) 이상은 ‘제2조에 의한 권리문제의 해결과 법적 대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분명하지 아니한 점’과 ‘청구권협정의 협상 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고 강제동원 피해자의 법적 배상을 원칙적으로 부인한 점’을 근거로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3. 7. 30. 선고 2012나4497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3. 11. 1. 선고 2012가합10852, 광주고등법원 2015. 6. 24. 선고 2013나5441 판결 등이 있다.

- 15) 1965년 체결된 「한일기본조약」은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日本国と大韓民国との間の基本関係に関する条約)과 4개의 부속협정 및 25개 문서를 총칭한다. 4개의 부속협정은 「어업에 관한 협정」, 「재일교포의 법적지위 및 대우에 관한 협정」,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등을 포함한다. 이 중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2조1항은 “양 계약국은 양 계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계약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4조 (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를 의미한다. 이 조항을 바탕으로 1965년 일본은 재산권에 대한 조치에 관한 법률 제144호(昭和四十年法律第一百四十四号)를 제정하였다(財産及び請求権に関する問題の解決並びに経済協力に関する日本国と大韓民国との間の協定第二条の実施に伴う大韓民国等の財産権に対する措置に関する法律).
- 16) 일본과 연합국 사이 평화조약으로 참가국은 총 48개국(아르헨티나, 호주, 벨기에, 볼리비아, 브라질, 캄보디아, 캐나다, 실란 (현재 스리랑카),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쿠바, 도미니카, 에콰도르, 이집트, 엘살바도르, 에티오피아, 프랑스, 그리스, 과테말라, 아이티, 온두라스, 인도네시아, 이란, 이라크, 라오스, 레바논, 라이베리아,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니카라과, 노르웨이, 파키스탄,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필리핀,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 시리아, 터키, 영국, 미국,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베트남)이다. 참고로 한국(ROK, DPRK)과 중국(ROC, PRC)은 제외되었다.
- 17) 장기저리 정부차관을 의미한다.

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의 전범기업 손해배상청구 승소판결은 청구권협정 제2조 1항에 위반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한국 정부의 시정 요구하였다. 따라서 신일철주금과 미쓰비시중공업도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이행하지 않았다.¹⁸⁾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여 강제징용 피해자 변호인단은 신일철주금과 포스코(POSCO)가 공동 설립한 제선·제강공정 부산물자원화 회사인 PNR(POSCO-Nippon Steel RHF¹⁹⁾ Joint Venture, Co., Ltd.) 주식 8만 1,075주와 미쓰비시중공업의 상표권 2건(서비스표 등록번호 제0323955호, 서비스표 등록번호 제0323956호), 특허권 2권(특허등록번호1183505, 특허등록번호 1521037)에 대하여 각각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과 대전지방법원에 압류 신청하였다. 대구지방법원은 2019년 1월 3일, 대전지방법원은 3월 22일 해당 국내자산에 대한 압류 신청을 승인하고 압류명령을 송달하였다²⁰⁾. 그러나 7월 19일 일본 외무성(外務省)이 신일철주금(2019년 4월 1일 일본제철로 법인명 변경)에 송달한 압류명령 결정문 등의 해외송달요청서²¹⁾를 반송함으로써 2020년 6월 1일 압류명령결정문 등에 대한 공시송달을 결정하고 8월 4일 발효하였다. 대전지방법원도 마찬가지로 2019년 4월 30일과 9월 22일 헤이그송달협약에 따른 송달요청서를 송부·송달하고 2020년 10월 29일 채무자 미쓰비시중공업에게 채권압류명령결정문에 대한 공시송달을 결정 후 12월 29일(특허권)·30일(상표권)에 발효하였다.

이러한 법원의 압류명령에 대하여 일본제철이 2020년 8월 7일에 즉시항고 하였으나 2021년 8월 11일 대구지방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8월 24일 법원행정

18) “미뤄진 ‘강제동원’ 미쓰비시 국내 자산 현금화…대법원, 결정 못 내나안 내나.” 『경향신문』 2022. 8. 19; “[단독]법원 “일본제철 국내 주식 강제 매각해 징용 피해자에 배상하라” [법조 Zoom In].” 『동아일보』 2021. 12. 30; 日本外務省, “大韓民國大法院による日本企業に対する判決確定について (外務大臣談話) (平成30年10月30日).”, 2018.

19) Rotary Hearth Furnace(회전로상식 환원로)의 약자이다. PNR은 2008년에 설립된 포스코의 출자사로 경상북도 포항시에 본사를 운영하고 있다(<https://p-nr.com>).

2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 1. 3. 선고 2018타채104598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9. 3. 22. 선고 2019타채53392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9. 3. 22. 선고 2019타채53337 판결.

21) 민사 또는 상사의 재판상 및 재판외 문서의 해외송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Service Abroad of Judicial and Extrajudicial Documents in Civil or Commercial Matters, 다자조약, 제1528호, 2000. 8. 16. 1969. 2. 10. 발효)에 근거하여 민사 또는 상사의 재판상 및 재판 외 문서는 피촉탁국 중앙당국에 송부하고 수령한 당국은 기일 내 수신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처 국제심의담당실에 사법공조촉탁서류를 발송하였다²²⁾. 이어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2021년 12월 30일 PNR 주식 특별현금화명령(매각명령)을 내렸다²³⁾. 이에 일본제철은 2022년 1월 19일 재항고하였으나 대구지방법원은 당해 9월 6일 기각하고 10월 5일 공시송달을 명령, 12월 22일에 발효하였다. 일본제철은 PNR 주식매각을 통하여 현금화를 명령한 법원의 판결에 12월 26일 재항고장을 제출함으로써 사건은 2023년 1월 26일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간 다음 5월 7일로 심리불속행기간이 도과하였다²⁴⁾.

이와 유사하게 미쓰비시중공업도 대전지방법원의 상표권과 특허권 압류명령에 대하여 2020년 12월 31일 즉시항고장을 법원에 제출하였으나 대전지방법원은 2021년 1월 6일·7일 각각 미쓰비시중공업의 상표권과 특허권에 대하여 사법보좌관처분인가를 결정하고 1월 7일·11일에 공시송달하였다. 미쓰비시중공업은 2021년 1월 15일과 18일 상표권과 특허권 압류명령에 불복·재항고하였으나 각각 2월 9일(특허권)과 3월 2일(상표권)에 기각되어 다시 2021년 5월 10일(특허권)에 재항고장을 제출하였다.²⁵⁾ 그러나 대전지방법원은 2021년 9월 21일(상표권)·27일(특허권) 특별현금화명령을 하였고²⁶⁾ 이에 미쓰비시중공업은 2021년 10월 8일과 13일에 다시 재항고하였으나 대전지방법원은 2022년 1월 28일(특허권)과 2월 3일(상표권) 기각한 후 2월 9일(상표권)·10일(특허권) 공시송달을 명령하고 2월 10일(특허권)·21일(상표권)에는 기각결정정본을 발송, 4월 12일(특허권)·22일(상표권) 발효하였다. 2022년 4월 15일(특허권)·26일(상표권) 미쓰비시중공업이 재항고장을 제출함으로써 2022년 4월 19일(특허권)과 5월 6일(상표권) 사건은 대법원으로 재이송되었다.²⁷⁾

22) 대구지방법원 2021. 8. 11. 선고 2020라10450, 2020라10790, 2020라10791 판결, 결정 3건 내용 동일.

2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 12. 30. 선고 2019타채101855 판결.

24) 대구지방법원 2022. 9. 26. 선고 2022라10061 판결; 대법원 2023마5044 2023. 5. 7. 계류중(심리불속행기간 도과).

25) 대전지방법원 2021. 2. 9. 선고 2021라10026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1. 3. 2. 선고 2021라10029 판결.

26) 대전지방법원 2021. 9. 21. 선고 2019타채60342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1. 9. 27. 선고 2019타채60343 판결.

27) 대전지방법원 2022. 1. 28. 선고 2021라10822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2. 2. 3. 선고 2021라10821 판결.

대법원은 외교부가 해당 연도 7월 26일에 제출한 외교적 협의 요청 의견서²⁸⁾로 인하여 심리불소속행 기각 결정을 보류하였다. 그로 인하여 특허권 특별 현금화명령 사건의 경우 2023년 6월 7일 신청 취하되었고 상표권 특별현금화명령은 담당 대법관의 퇴임에 따라서 상고심 사건 처리가 지연되었다.²⁹⁾ 미쓰비시 중공업 특허권과 관련하여 대전지방법원은 2023년 6월 12일 채무자 미쓰비시중공업에 해제통지서를 공시송달 후 6월 13일·26일 특허청 등록촉탁서를 송달하였다.³⁰⁾ 이와 같이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이행이 지체되는 한편 2021년 6월 7일 서울지방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 85명(송영호 외 84명)의 스미세키 마테리아루즈(住石マテリアルズ株式会社) 외 15개 일본 전범기업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하여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청구권협정 해석에 대한 소수 의견³¹⁾과 비엔나협약 제27조³²⁾와 금반언(estoppel) 원칙³³⁾ 등 국제법 위반에 대한 염려를 근거로 각하한 것을 시작으로³⁴⁾ 2021년 8월 11일 이원수 외 4명의 미쓰비시 마

28)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http://gidwvstory.kr>)이 열람 후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외교부는 판결 보류 취지의 합리적인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외교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김상희 외 173명 국회의원은 2023년 4월 24일 특별현금화명령 판결 요청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하였다.

29) 대법원 2023. 6. 7. 선고 2022마5696 판결; 대법원 2022마5815 2022. 9. 7. 계류 중(심리불소속기간 도과).

30) 대전지방법원 2023. 6. 12. 선고 2019타재53337 판결.

31) 권순일·조재연 대법관은 ‘청구권협정에 따라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이 제한되는 것으로 보아 하므로 대한민국이 피해자에 대해 정당하게 보상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다. 동일한 맥락에서 해당 판결문은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인하여 ‘개인 청구권의 완전한 소멸’까지는 아니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이나 일본 국민을 상대로 소로써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제한된다.’로 해석하고 소송을 각하하였다.

32) 비엔나협약 제27조는 ‘어느 당사국도 조약의 불이행에 대한 정당화의 방법으로 그 국내법 규정을 원용해서는 아니 된다.’이다.

33) 이전의 관련 사법재판에서 한 발언이나 행위를 통하여 암시했던 것과 배치·모순·상반된 주장을 하는 것을 방지하는 원칙이다.

3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30. 선고2015가합13718 판결. 해당 사건은 원고 17명이 피고 일본기업 7곳(1심)의 경우 원고 85명, 피고 16 기업: 신일본제철(新日本制鉄), 우베 흥산(宇部興産), 스미토모 금속광산(住友金屬鉱山), 북해도탄광기선(北海道炭鉱気), 일산화학공업(日産化学), 스미토모 석탄광업(住友石炭鉱業), TSUCHIYA, 스가와라건설(菅原建設), 미쓰이조선(三井朝鮮), JX일광일석에너지(JX日鉱日石エネルギー), 니시마즈건설(西浜建設), 미쓰비시마테리얼(三菱マテリアル), 미쓰비시광업(三菱鉱業), 아마구찌합동가스(山口合同ガス), 이와타건설(岩田地崎建設),

테리아루(三菱マテリアル株式会社)³⁵⁾, 2021년 9월 8일 일본제철³⁶⁾, 2022년 2월 8일 일본제철³⁷⁾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소멸시효³⁸⁾ 도과를 이유로 연이어 패소하였다.

이와 같이 상고심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 가운데³⁹⁾ 2023년 3월 6일 정부가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해법」으로 제시한 한국 정부의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 지원재단’을 통하여 한일 양국 기업이 마련한 배상금을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형태인 ‘제3자 변제방식’이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였다.⁴⁰⁾ 2023년 12월 21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⁴¹⁾와 12월 28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⁴²⁾가 강제징용 피해자 측이 미쓰비시중공업

토비시마건설(飛鳥建設), 미쓰이금속공업(三井金屬工業) 이상 16개 주식회사)을 상대로 한 항고가 진행 중이다(서울고등법원 2021나2031703). 2023년 5월 11일 서울고등법원은 법률적 판단에 앞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각각의 일본기업에 원고 근무 사실 확인을 요청하였다.

- 35)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8. 11. 선고 2017가단5042169 판결.
- 36)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9. 8. 선고 2019가단5086804 판결. 해당 사건은 항고가 진행 중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56079).
- 37)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2. 8. 선고 2019가단5076593 판결. 해당 사건은 항고가 진행 중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나12168).
- 38)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1항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에 근거한 판결로 2018년 재상고심 판결 기준이 아닌 2012년 대법원이 판시한 청구권형정의 적용대상에 대한 법리를 기준으로 강제징용 피해자의 객관적 권리행사 장애사유는 2012년 해소된 것으로 보고 소멸시효가 도과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반면에 앞서 2018년 12월 5일 광주고등법원은 강제노역 피해자 양영수 외 3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소멸시효 기산점을 대법원의 재상고심 판결 시점으로 판단하고 2017년 8월 11일 광주지방법원의 원고일부승 판결에 대한 미쓰비시중공업의 항고를 기각하였다(광주지방법원 2013. 11. 1. 선고 2012가합10852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7. 8. 11. 선고 2014가합1463 판결; 광주고등법원 2015. 6. 24. 선고 2013나5441 판결; 광주고등법원 2018. 12. 5. 선고 2017나13822 판결;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5다45420 판결;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18다303653 판결).
- 39) 관련 사건은 대한민국 법원(<https://www.scourt.go.kr>)의 대국민서비스-사건검색을 통하여 판결문과 사건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 40) 일본 정부의 식민지배의 불법성 인정 없이 일본의 피고기업 대신 국내기업이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형태이다. 예컨대, 현재 변제금은 국내기업인 포스코가 재단에 기탁한 40억 원을 바탕으로 구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2023년 정부 출자기관 배당금 1조 2,387억원 확정.”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3.
- 41)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18다303653 판결 [손해배상(가)] [공2024상.204]; 사건 2018다303653 손해배상(가);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2018. 12. 5. 선고 2017나13822 판결.

에 제기한 손해소송 상고심에서, 이어서 2024년 1월 11일에는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가 일본제철 강제동원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상고심⁴³⁾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확정함으로써 소위 ‘강제징용 2차 소송’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의 승소로 마무리되었다. 이후 하급심에서는 다른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의 청구권 인정을 촉구하는 소송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청구 소송은 일본군 위안부 손해배상청구소송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다음으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 청구 사건과 함께 한일 관계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손해배상청구소송에 관해 간략하게 덧붙여서 분석하겠다.

2.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

‘일본 국가(천황)을 위해서 몸을 바치는 부대’라는 의미의 정신대(挺身隊)는 일본 정부가 1944년 여성을 군수공장에 동원하기 위하여 제정·공포한 ‘여자정신근로령(女子挺身勤勞令)’⁴⁴⁾으로 인하여 일본군 위안부와 혼용되어 왔다. 여성근로정신대의 경우 앞서 살펴본 강제징용 피해자로 간주될 수 있다면 위안부는 성적 착취의 전쟁범죄의 피해자로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와 일본군 위안부의 성격은 다르지만 둘 다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통하여 일본 정부의 손해 배상책임을 확인한다는 점과 일본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 소송과 마찬가지로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양국 간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까지 소멸하여 합의함으로써 배상책임이 없음을 주장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측면이 있다.

일본군 위안부의 경우 2015년 11월 2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가능한 조기 위안부 문제 타결을 위한 협의 가속화” 합의안에 따라서 양국은 12월 28일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韓日 日本軍 ‘慰安婦’ 合意)」를 체결하였다. 위안부 합의

42)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19다253205, 2019다253212(병합) 판결 [손해배상(기), 손해배상(기)]; 사건 2019다253205 손해배상(기), 2019다253212(병합) 손해배상(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6. 27. 선고 2016나2064327, 2016나2064334(병합) 판결.

43)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18다47533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8다47533 손해배상(기);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나56389 판결.

44) 女子挺身勤勞令・御署名原本・昭和十九年・勅令第五一九号.

내용을 근거로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 종결 조건으로 출연한 10억 엔(약 108억 원)으로 한국 정부는 2016년 7월 28일 여성가족부 소관의 '화해·치유재단'을 공식 출범하여 일본군 위안부 생존 피해자 47명 중 34명과 사망 피해자 199명 중 58명에게 치유금으로 총 44억 원을 지급하고 운영비로 약 5억9천만 원을 사용하였다. 박근혜정부 탄핵 후 2017년 5월 10일 새로 출범한 문재인정부의 여성가족부는 2018년 11월 21일 '화해·치유재단'의 설립 허가 취소를 발표하고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을 근거로 2019년 1월 21일에 공식적으로 해산하였다.⁴⁵⁾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역사적 쟁점은 한국과 일본 양국 간 문제로 국한된 것이 아니라 1990년대부터 '전쟁 중 여성 인권 침해 사례'로 국제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1997년 7월 25일에 윌리엄 리핀스키(William O. Lipinski) 의원(D, IL)에 의하여 미국 하원(Congress)에 처음으로 발의된 일본군 위안부 사죄 결의안(HR126, 105th)⁴⁶⁾은 이어서 레인 에반스(Lane A. Evans) 의원(D, IL)이 2000년 6월 19일(HR357, 106th), 2001년 7월 24일(HR195, 107th),⁴⁷⁾ 2003년 6월 23일(HR226, 108th), 2005년 2월 16일(HR68, 109th), 2006년 4월 4일(HR759, 109th)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서 다시 발의하였으나 본회의 상정에는 실패하였다. 2007년 1월 31일에 이르러 마이클 혼다(Michael M. Honda, 本田 実) 의원(D, CA)이 재차 발의한 일본군 위안부 사죄 결의안(HR121, 110th)⁴⁸⁾이 마침내 7월 30일에 수정·가결되었다. 미 하원의 일본군

45) "화해치유재단 2년 4개월 만에 '해산' 결정." 『KTV 국민방송』 2018. 11. 21; "위안부 피해자 뜻대로 화해·치유재단 해산." 『경향신문』 2018. 11. 21.

46) 「Expressing the sense of Congress concerning the war crimes committed by the Japanese military during World War II」.

47) 「Expressing the sense of Congress that the Government of Japan should formally issue a clear and unambiguous apology for the sexual enslavement of young women during colonial occupation of Asia and World War II, known to the world as "comfort women", and for other purposes」.

48)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House Foreign Affairs Committee) 산하 국제기구 인권·감독소위원회(House Foreign Affairs Subcommittee o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Human Rights, and Oversight)와 아시아·태평양·환경소위원회(House Foreign Affairs Subcommittee on Asia, the Pacific, and the Global Environment)에서 채택된 후 본회의에서 수정·가결되었다. 수정·가결된 발의안명은 「A resolution expressing the sense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that the Government of Japan should formally

위안부 사죄 결의안(HR121, 110th) 가결에 이어서 11월 28일 캐나다 하원(House of Commons of Canada)에서 Motion 291,⁴⁹⁾ 12월 13일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에서 P6_TA(2007)0632,⁵⁰⁾ 2008년 11월 18일 네덜란드 하원(Tweede Kamer der Staten-Generaal)에서 31700-V-37 Motion⁵¹⁾ 등 일본군 위안부 사죄 결의안이 채택되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특정한 개별 국가의 문제로만 제한되지 않고 국제사회에서 인권과 여성 권리에 대한 포괄적인 사항으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한국의 경우, 1991년 8월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김학순 할머니의 생존자 중 최초 공개 증언과 당해 12월 6일 한국 태평양전쟁 희생자 유족회가 도쿄지방법원(東京地方裁判所)에 일본 정부의 사죄 및 손해배상을 제소⁵²⁾한 후 연이은 피해자들의 증언이 이어졌다. 비록 아시아태평양전쟁 한국인 희생자 보상청구사건은 2001년 3월 26일 도쿄지방법원이 청구를 기각⁵³⁾한 후, 이어서 2003년 7월 22일 도쿄고등법원(東京高等裁判所)이 원고의 항소를 다시 기각⁵⁴⁾,

acknowledge, apologize, and accept historical responsibility in a clear and unequivocal manner for its Imperial Armed Forces' coercion of young women into sexual slavery, known to the world as "comfort women", during its colonial and wartime occupation of Asia and the Pacific Islands from the 1930s through the duration of World War II」으로 "Expresses the sense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that the government of Japan should: (1) formally acknowledge, apologize, and accept historical responsibility for its Imperial Armed Force's coercion of young women into sexual slavery (comfort women) during its colonial and wartime occupation of Asia and the Pacific Islands from the 1930s through the duration of World War II; (2) have this official and public apology presented by the Prime Minister of Japan; (3) refute any claims that the sexual enslavement and trafficking of the comfort women never occurred; and (4) educate current and future generations about this crime while following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recommendations with respect to the comfort women." 내용을 담고 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https://www.congress.gov>에서 확인할 수 있다.

49) 「Violence against women」, 내용은 <https://www.ourcommons.ca>에서 확인할 수 있다.

50) 「European Parliament resolution of 13 December 2007 on Justice for the 'Comfort Women' (sex slaves in Asia before and during World War II)」.

51) 「Motion Van Baalen et al. on Japan's recognition of the fate of comfort girls」, 보다 상세한 내용은 <https://www.tweedekamer.nl>를 참고할 수 있다.

52) 아시아태평양전쟁 한국인 희생자 보상청구사건(アジア太平洋戦争韩国人犠牲者補償請求事件).

53) 平成3年(ワ)第17461号,平成4年(ワ)第5809号.

2004년 11월 29일 대법원 제2소법정(最高裁判所의裁判官 第二小法廷)이 또다시 원고의 상고를 기각⁵⁴⁾하여 패소가 확정되었으나 일본에서의 일본군 위안부 한국인 피해자가 처음으로 제소한 소송으로 국내외 관심이 집중되었다. 이에 2008년 10월 27일 제18대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여성위원장이 당해 10월 8일 제안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공식사과 및 배상 촉구 결의안」(의안번호 제1125호)이 상정·가결되었다. 이는 제17대 국회에서 제안된 「일본군 위안부 사할린 억류자·원폭 피해자에 대한 피해 배상 촉구 결의안」(의안번호 제2965호), 「일본군 위안부 문제 청구권협상 촉구 결의안」(의안번호 제4981호),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 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725호), 「미국 하원의 ‘위안부’ 관련 결의안(H. RES. 121) 지지 결의안」(의안번호 제6136호) 등이 국회임기 만료로 폐기된 것과 차이를 보인다. 국회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은 2009년 7월 24일 대구광역시의회⁵⁶⁾를 시작으로 전국 지방의회의 결의안 채택으로 이어져서⁵⁷⁾ 전국적으로 일본 정부에 1930년대부터 제2차 세계대전에서의 일본군에 의한 성노예화의 인정과 공식 사과, 이에 대한 공적 교육의 시행과 배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대한 여론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흐름에 따라서 국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현재에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와 상반되게 2016년 12월 28일 일본군 위안부 한국인 피해자 11명과 사망한 피해자 5명의 유족⁵⁸⁾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54) 平成13年(ネ)第2631号.

55) 平成15年(オ)第1895号, 判例時報1879号58頁.

56)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안정보시스템 <https://likms.assembly.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57) 서울시의회(2010.8.16), 부산시의회(2010.4.9), 대구시의회(2009.7.24), 대전시의회(2010.8.31), 인천시의회(2010.2.5), 광주시의회(2010.9.15), 울산시의회(2010.3.23), 경기도의회(2011.3.8), 강원도의회(2011.9.9), 충청북도의회(2010.9.16), 충청남도의회(2011.9.8), 전라북도의회(2011.5.17), 전라남도의회(2011.9.29), 경상북도의회(2011.6.24), 경상남도의회(2009.12.24) 등의 특별·광역시·도의회를 비롯한 시·군·구의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채택·발의되었다(각 특별·광역시·도의회 의안정보시스템 및 회의록 참고, 제주도의회에서는 채택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58) 박예담(故)·김복동(故)·윤순만·이상희(故)·이수신(故)·이용수·함귀란·한계수·노완남·김명자·김명옥·왕상문·왕선에·왕원자·왕상엽 등.

2021년 4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는 국가면제에 대한 ICJ(ICJ: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판결(Germany v. Italy)⁵⁹⁾과 대한민국 대법원의 국가면제에 관한 판례⁶⁰⁾를 근거로 외국인 피고를 상대로 주권적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며 대한민국 법원이 피고에 대한 재판권을 갖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소송요건 미충족으로 각하하였다⁶¹⁾. 이는 당해 1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민사부가 관련 법리를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 결정⁶²⁾을 참고하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일본국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및 ‘2015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합의’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원고 1인당 1억 원의 손해배상을 판결한 것과 상충된다고 볼 수 있다⁶³⁾.

2023년 11월 23일 서울고등법원 제33민사부는 다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민사부의 판결과 동일한 취지로 국가면제 관련 재판권 유무를 미국의 Foreign Sovereign Immunity Act(28 U.S.C. §1605), 일본의 「외국에 대한 민사재판권에 관한 법률」(外国等に対する我が国の民事裁判権に関する法律), 영국의 State Immunity Act 1978 등 국외 개별 국가의 입법 내용과 함께 이탈리아 대법원(Corte di Cassazione)의 BP 판결(Cassazione 5044/2004), 그리스 대법원(Areios Pagos)의 디스토모 판결(Case No 11/2000), 이탈리아 피렌체 항소법원(Corte di Appello Firenze)의 디스토모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 승인 결정(Sentenza n. 159/2023), ICJ의 Germany v. Italy 판결(Germany v. Italy: Greece intervening), 브라질 연방대법원(Supremo Tribunal

59) Jurisdictional Immunities of the State(Germany v. Italy: Greece intervening), Judgment of 3 February 2012.

60) 대법원 1975. 5. 23. 74마281 판결; 법원 1998. 12. 17. 선고 97다39216 판결;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6다264174 판결; 대법원 2018. 10. 11. 선고 2018다245528 판결; 대법원 2019. 4. 5. 선고 2018다301541 판결.

6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21. 선고 2016가합580239 판결.

62) 대법원 1998. 12. 17. 선고 97다3921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09다16766 판결; 헌법재판소 2017. 5. 25. 선고 2016헌바388 전원재판부 결정.

6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8. 선고 2016가합505092 판결.

Federal)의 Changri-la 판결(954.858 Rio De Janeiro), 우크라이나 대법원(ВЕРХОВНИЙ Суд)의 러시아 연방의 불법적 군사 행동으로 인해 발생한 개인의 피해에 대한 보상에 관한 판결(308/9708/19), 영국 고등법원(Queen's Bench Division of the English High Court)의 사우디아라비아의 국가면제 요청 기각(Al Masarir v. Kingdom of Saudi Arabia ([2022] EWHC 2199 (QB)) 등 해외 판례를 근거로 일본군의 강제징용을 대한민국 민법상 불법행위로 판단하고 제1심에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18조에 의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의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배상금 지급을 명령하였다.⁶⁴⁾

이에 일본 정부가 국가면제 원칙에 따라서 불응해 항소하지 않아서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러한 일본 정부의 불응은 항소권 '포기'보다는 '무대응'으로 배상금을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것에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민사부의 판결⁶⁵⁾ 후 2021년 3월 29일 주심판사가 변경된 제34민사부는 한일청구협정, 위안부 합의, 비엔나 협약 제27조, 금반어원칙 등에 근거한 국제법 위반에 대한 염려로 소송비용에 대한 추심 불가 결정을 송달하였다.⁶⁶⁾ 한편, 2021년 4월 13일에 제소한 추심을 위한 재산명시에 관해서는 2021년 6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1단독 남성우 판사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소송에 패소한 일본에 배상금 강제집행은 적법으로 판단하여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재산명시 기일에 제출을 주문하고 채무자에게 재산명시명령 등 서류를 송달하였으나 재차 반송됨으로써 송달할 방법이 없어 2022년 9월 15일 재산명시명령을 취소하고 채권자들의 신청을 각하하였다.⁶⁷⁾ 이에 피해자들은 2022년 9월 29일 항소를 접수하였으나 2024년 7월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항고 이유 없음으로 기각하였다.⁶⁸⁾

이와 같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일제 강제징용

64) 서울고등법원 2021. 11. 23. 선고 2021나2017165 판결.

65) 서울고등법원 2023. 11. 23. 선고 2016가합505092 판결.

66) “강제징용 뒤집은 판사 “Ի에 위안부 소송비 추심 못한다” 항고도 각하.” 『서울신문』 2021: [판결] 위안부 피해자들, 'Ի에 소송비용 추심 불가' 법원 결정에 항고했지만 '각하'. 『법률신문』 2021. 6. 18.

67)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15. 선고 2021카명391 판결.

68)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11. 선고 2022라730 판결.

피해자와 같이 심급제도의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판례를 따르기보다는 담당 판사의 법리에 대한 해석에 따라서 판결이 뒤바뀌는 사례가 목격된다. 또한 손해배상청구 승소 판결 이후에도 채무자의 송달 문서 수리 거부 및 반송으로 피해자들이 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재판례는 향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판결에 따라서 한국과 일본 양국 간 무역 분쟁이 재차 발생할 수 있음을 함의한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이러한 한일 무역 분쟁이 실제 양국의 국제수지와 증권시장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세계무역기구의 무역통계와 국내의 주가지수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III. 한일 무역 분쟁과 그에 따른 경제 효과

지난 2019년 8월 일본은 수출절차 우대국가 제도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지역 구분을 Group A(그룹A)가 아닌 Group B(그룹B)로 격하하는 내각명령을 승인(2일)·시행(28일)하였다. 이에 산업통산자원부는 2019년 8월 5일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 2020년 7월 9일 ‘소재·부품·장비 2.0 전략’, 10월 15일 ‘소부장 R&D 고도화 방안’, 2021년 11월 17일 ‘소부장 미래선도품목 R&D 추진 방안’ 수립으로 공급망 핵심 품목을 확대하는 등 경쟁력 강화와 함께 ‘소부장 경쟁력 강화위원회’를 설립해서 신속한 의사결정 체계를 마련하는 등 국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육성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시도하였다.⁶⁹⁾ 세부적으로 정부는 세제감면, 금융지원, 규제완화, 제도개선 등을

69) 산업통산자원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대책.”, 2019; 산업통산자원부, “소부장 R&D 고도화 방안.”, 2019; 산업통산자원부, “소재부품장비 2.0전략.”, 2020; 산업통산자원부, “소부장 미래선도품목 R&D 추진방안.”, 2021; “특명! 기술독립 선봉장 ‘소부장’ 자립.”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2;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라서 2019년 8월 22일 문재인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종료를 통보하고 23일 종료하였다(종료통보 효력정지). 참고로 2023년 3월 21일 윤석열 정부는 2019년 종료통보 관련 두 건의 공한을 모두 철회한다는 결정을 일본 측에 사면 통보하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정상화하였다(“지소미아 관련 김유근 NSC 사무처장 정부 발표문.”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19; “윤 대통령 “한일, ‘제로섬’ 관계 야나·함께 더 많이 얻는 ‘윈-윈’ 될 수 있어.”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3.).

통하여 불화수소(솔브레인, SK머티리얼즈), 포토레지스트(미 듀폰),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코오롱인더스트리, SKC)의 국내 생산·재고·투자 확대와 소부장 공급 안정·자립화를 도모하고 수입국 다변화를 추진해서 일본에 대한 수입의존도를 낮추고자 하였다.⁷⁰⁾

일본 기업도 한국에 대한 납품 물량 복귀를 요청하여 2019년 8월 8일 신에츠화학(信越化学)이 신청한 포토레지스트를 시작으로 8월 30일에는 스텔라케미파(ステラケミファ, Stellachemifa Corporation)가 한국 삼성전자로의 불화수소 수출에 대한 일본 경제산업성의 허가를 받았다. 일본 정부는 자국의 한국에 대한 반도체 주요 핵심부품 수출규제로 발생할 수 있는 한국 기업의 대규모 수입액 감소에 대한 우려로 2023년 3월 16일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에 대한 수출을 2019년 8월 이전과 동일하게 개별허가에서 포괄허가로 재변경함에 따라서 한국 정부도 3월 23일 세계무역기구 제소를 철회하고 4월 12일에는 2019년 8월 14일 별도의 전략물자 수출지역(나 지역, 현재 가의 2)으로 지정했던 일본을 다시 전략물자 수출우대지역인 ‘가 지역’(현재 가의 1)으로 전환하였다. 이에 일본 정부는 6월 27일 한국을 Group A(グループA)로 재지정하였다.⁷¹⁾

관련 선행연구는 크게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해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의 수출을 ‘완전히 금지’한 것이 아니라는 점과 국내 보유재고 활용, 소재·제품·장비의 국산화 및 수업처 다변화 등으로 인하여 국내 반도체 디스플레이 생산공정이나 일본 반도체 원자재 수출에 유의한 파급효과가 없었다는 분석과⁷²⁾ 양국의 국제수지 감소 등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로 나누어진

70)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대책.”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19; “확실한 ‘소부장’ 자립으로 흔들리지 않는 산업강국 실현한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0; 정부 국내 소부장시장 육성정책으로 장기적으로 소부장 국내화에 발판을 마련하였으나 여전히 저렴한 가격으로 인한 중국, 국내 미생산·고품질로 인한 일본에 대한 소부장 의존도는 심화되어 단기적 효과는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중·일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GVC 연계성 연구.” 2020; 한국무역협회, “한중일 소부장 의존도 심화… 대체 공급망 형성 어려워. 한중일 소부장 의존도 심화… 대체 공급망 형성 어려워 - 수입 이유는 중국 ‘저렴한 가격’.”, 2021.).

71) 日本経済産業省, “輸出管理内部規程の届出等について.”, 2022; 日本経済産業省, “韓国向け輸出管理の運用の見直し.”, 2023; “윤 대통령 “한일, ‘제로섬’ 관계 아냐…함께 더 많이 얻는 ‘윈-윈’ 될 수 있어.”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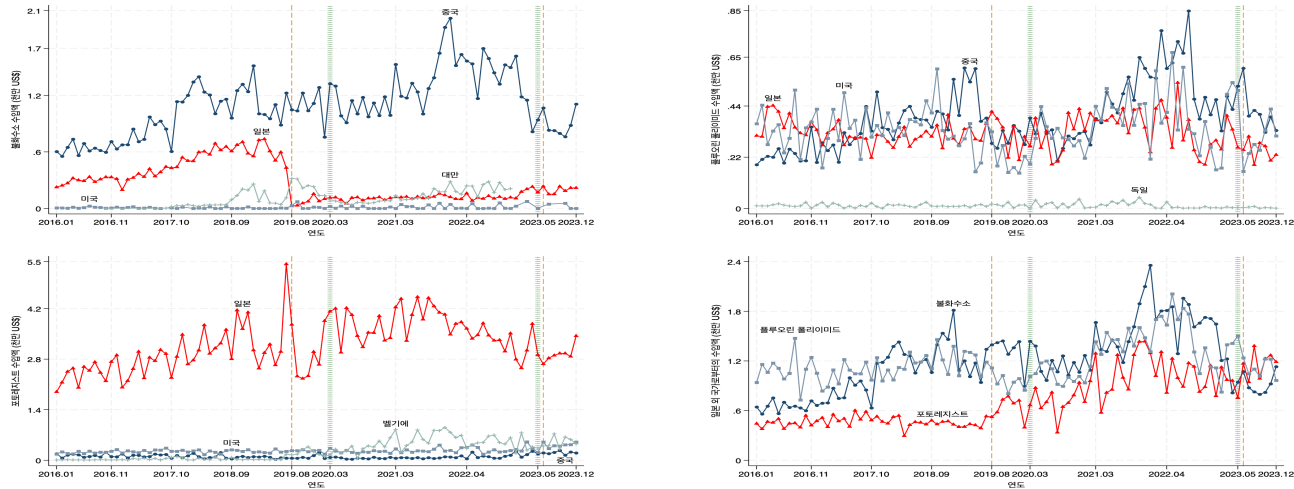
다.73) 이에 본 연구는 양적 자료 분석을 통해서 일본의 수출제재 효과를 보다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세계무역기구의 무역 통계자료를 활용하고자 한다. 6자리 품목코드(HS Code)로 식별되는 한국과 일본의 불화수소(HS281111), 포토레지스트(HS370790), 플루오린 폴리이미드(HS391190) 수출·수입액의 연도별 추이와 함께 양국의 전반적인 국제수지 변화를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그림 1〉은 2016년 1월부터 2023년 12월 사이 한국의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수입액의 월별 변화를 나타낸다. 초록색 점선은 각각 2019년 8월과 2023년 6월로 일본의 수출규제가 이루어졌던 기간을 의미하며 주황색 파선은 2020년 3월과 2023년 5월로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가 코로나팬데믹(COVID19)의 시작과 종식을 선포한 기간을 의미한다. 세계무역기구의 월별 무역통계에서는 대만 자료가 제공되지 않으므로 'Other Asia, nes (S19)'를 대만으로 간주하고 무역 상대국이 기록한 수출·입액 자료를 역으로 활용하였다. 마찬가지로 한국의 2023년 월별 자료가 제공되지 않으므로 역으로 한국의 무역 상대국이 기록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72) 다카야스 유이치, “한일경제관계의 현상 및 대응방안.” 한일경제관계 개선 세미나, 2019. 11. 18; 산업통산자원부, “(설명자료) WTO 분쟁해결절차 중단은 한일 수출규제 현안 원상회복 논의 전제로 취한 잠정조치로 수출규제 해소 前 철회가 아님.”, 2023; 최혜린, “한일무역분쟁의 게임이론적 분석.” 『무역학회지』 제46권 제5호, 2021, pp. 1~12.

73) 日本経済産業省, “2019年は韓国への輸出が大幅に低下。その要因とは?”, 2020; 日本貿易振興機構, “韓国向け消費財輸出は回復へ”, 2023.

〈그림 1〉 국가별 한국의 불화수소(HS281111), 포토리지스트(HS370790), 플루오린 폴리이미드(HS391190) 수입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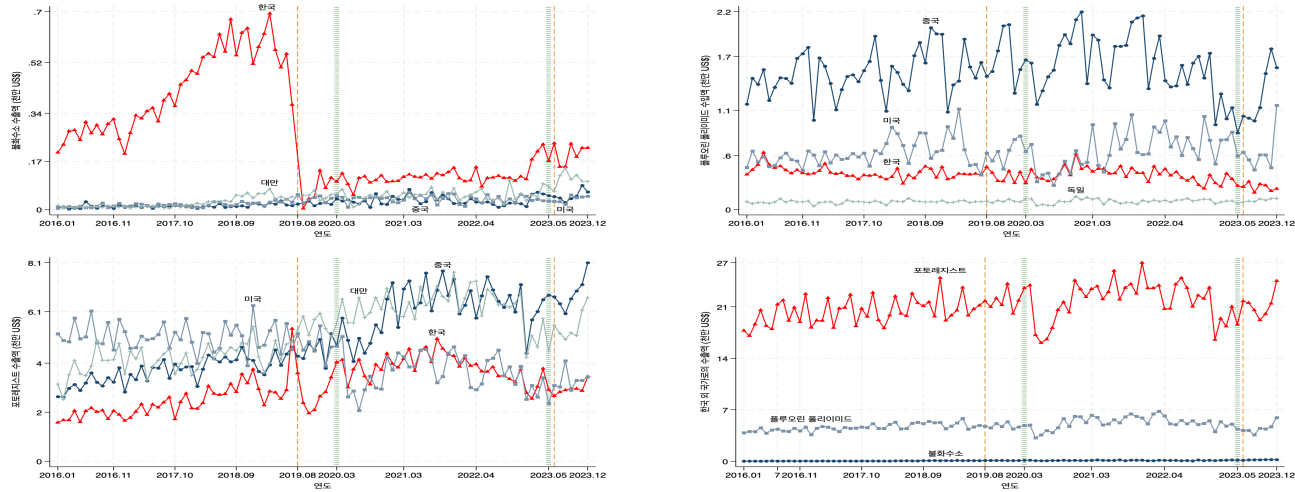
출처: UN Comtrade Database (2016-2023). Trade Data를 이용하여 저자가 직접 작성.

주: 초록색 점선과 주황색 파선은 각각 한일 양국간 무역제재(2019년 8월, 2023년 6월)와 세계보건기구에서 선포한 코로나팬데믹(COVID19, 2020년 3월, 2023년 5월)의 시작점과 해제 점을 의미한다. 대만과 2023년 한국 무역통계는 UN Comtrade에서 제공되지 않으므로 다른 나라의 대만과 한국 수출입액 자료를 활용하였다. 또한 자료에서 'Other Aisa, nes (S19)'를 대만으로 간주하였다.

먼저 한일 무역 분쟁이 야기되었던 2019년 8월(초록색 점선)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직전월인 7월 한국의 불화수소 최대 수입국은 중국(1.23천만 달러), 일본(0.43천만 달러), 대만(0.11천만 달러), 미국(0.002천만 달러)으로 각각 전체 수입액의 91.36%, 32.16%, 8.41%, 0.18% 차지하는 반면에 2019년 8월에는 중국(1.05천만 달러), 대만(0.32천만 달러), 미국(0.03천만 달러), 일본(0.02천만 달러) 순으로 전체 수입액의 75.08%, 22.76%, 2.15%, 1.74%를 구성한다. 포토레지스트의 경우 일본의 수출규제 전후의 국가별 수입액 감소폭이 더 두드러지는데 2019년 7월과 8월 사이 최대 수입국인 일본(5.43천만 달러, 91.10%)이 차지하는 비율은 3.33%p 감소한 반면에 미국(0.25천만 달러, 4.13%), 벨기에(0.17천만 달러, 2.83%), 중국(0.06천만 달러, 0.99%)은 각각 2.10%p, 0.64%p, 0.37%p 증가하였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2019년 8월 이후부터 감소 추세를 보이며 11월 최저점을 기록하였다. 8월과 11월 수입액을 비교하면 과거 최대 수입국이었던 일본(0.42천만 달러, 27.15%)과 미국(0.33천만 달러, 21.52%)의 비율은 각각 5.85%p와 6.52%p 감소한 반면에 중국(0.28천만 달러, 18.26%)은 9.09%p 증가하여 새로운 최대 수입국이 되었다. 직접적인 규제 대상품이었던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수입액의 월별 추이를 살펴보면 한일 무역 분쟁 이후 감소와 함께 상승 추세도 관측되기 때문에 단기가 아닌 중·장기에서의 수입액 감소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난다.

다음으로 <그림 2>에서 일본의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수출액을 살펴보고 한일 무역 분쟁이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에 어떤 영향을 가져왔는지 확인하겠다. 2019년 7월 일본의 최대 불화수소 수출국은 한국(0.35천만 달러), 대만(0.04천만 달러), 미국(0.03천만 달러), 중국(0.01천만 달러) 순으로 한국이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80.47%이다. 2019년 8월 한국으로의 수출액은 0달러로 미국로의 수출액이 0.05천만 달러(44.71%), 대만 0.04천만 달러(37.38%), 중국 0.02천만 달러(16.36%)로 전체 수출액이 0.34천만 달러 감소하여 전월의 25.68% 수준을 기록하였다. 포토레지스트 또한 2019년 7월 기준 한국(5.40천만 달러, 20.31%)이 일본의 최대 수출국으로 대만(4.88천만 달러, 18.36%), 중국(4.65천만 달러, 17.50%), 미국(4.56천만 달러, 17.13%)이 뒤를 잇는다.

〈그림 2〉 국가별 일본의 불화수소(HS281111), 포토레지스트(HS370790), 플루오린 폴리이미드(HS391190) 수출액



출처: UN Comtrade Database (2016-2023). Trade Data를 이용하여 저자가 직접 작성.

주: 초록색 점선과 주황색 파선은 각각 한일 양국간 무역제재(2019년 8월, 2023년 6월)와 세계보건기구에서 선포한 코로나팬데믹(COVID19, 2020년 3월, 2023년 5월)의 시작점과 해제 점을 의미한다. 대만과 2023년 한국 무역통계는 UN Comtrade에서 제공되지 않으므로 다른 나라의 대만과 한국 수출입액 자료를 활용하였다. 또한 자료에서 'Other Aisa, nes (S19)'를 대만으로 간주하였다.

한일 무역 분쟁 시작 시점인 2019년 8월 한국으로의 수출액은 33.43% 감소하여 전체 수출액의 14.17%를 차지한 반면에 대만(5.35천만 달러)과 미국(5.21천만 달러)이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2.71%p, 3.41%p 증가하였고 일본의 전체 수출액은 26.60천만 달러에서 25.28천만 달러로 4.58% 감소하였다. 반면에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2019년 7월에 비하여 8월 한국으로의 수출액이 0.38천만 달러에서 0.47천만 달러로 증가하였으며 이후 변동이 관측되지만 중국과 미국과 더불어 일본의 최대 수출국으로의 지위는 불변하였다. 따라서 수출 규제 핵심 소재 세 가지 중 일본의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에 대한 대체재가 부재함을 알 수 있다.

한일 무역 분쟁이 국내외 주목을 받은 가장 큰 이유는 일본 정부가 한국의 주요 수출 상품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 핵심 소재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에 대한 수출을 일반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 대상으로 변경하면서 한국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업체의 원자재 확보에 차질이 발생하여 한국의 수출액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예측 때문이었다. 이에 본 연구는 <그림 3>에서 한국의 수출입액 변화를 주요 무역 상대국별로 살펴보았다. 한국의 수출액은 한일 무역 분쟁이 발생한 2019년 8월보다 이전인 2018년 10월을 기점으로 감소하여 2019년 2월에 최저점인 37.19억 달러를 기록한 후 다음 달 44.74억 달러로 반등한 다음 시장 상황에 따라서 변동하다가 세계보건기구의 코로나팬데믹 선언 직후인 2020년 4월에 전월 대비 21.52% 감소한 34.28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2022년 3월까지 우상향하는 변동 곡선을 보이며 61.91억 달러에서 최고점에 도달한 후 감소하다가 2023년 2월 41.15억 달러의 최저점에서 당해 3월 세계보건기구의 코로나팬데믹 종결 선언 후 16.45% 증가하며 회복 추세를 보였다. 수입액 또한 수출액 변화와 유사한 추세를 보이며 한국의 국제수지는 2021년 12월까지 흑자액을 기록하다가 2022년 1월 및 4-12월 적자액을 기록하였다. 코로나팬데믹 종결 직전인 2023년 1월부터 다시 흑자액으로 반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무역 상대국별로 살펴보면 2019년 7월 기준 한국의 최대 수출국은 중국(11.44억 달러), 미국(6.13억 달러), 베트남(4.22억 달러), 홍콩(2.76억 달러), 일본(2.54억 달러) 순으로 중국으로의 수출액은 전체 수출액 43.53억 달러 중 25.28%를 차지한다. 최대 수입국은 중국(9.39억 달러), 미국(5.40억 달러), 일본

(4.20억 달러), 독일(1.95억 달러), 사우디아라비아(1.88억 달러), 베트남(1.81억 달러) 순으로 수출과 마찬가지로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이 전체의 23.74%를 구성한다. 한일 무역 분쟁 후 2019년 8월에는 최대 수출국은 순서는 변함이 없으며 수출액은 전월에 비하여 4.04% 감소하였다. 수출 상대국별로 분석하면 중국 1.37%, 미국 7.97%, 홍콩 6.65%, 일본 11.87% 감소한 반면에 베트남은 6.25% 증가하였다. 수입액 또한 전월에 비하여 2.50% 감소하였으며 중국 11.50%, 미국 3.89%, 일본 7.53%, 독일 6.35% 감소한 반면에 베트남 10.10%, 사우디아라비아 20.30%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통계수치를 근거로 일본으로의 수출액은 다른 수출국에 비하여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에 수입액은 중국에 비하여 감소폭이 작게 나타나서 일본과의 국제수지에 한일 무역 분쟁이 부정적 영향을 준 것과 같이 보이거나 코로나팬데믹 기간과 겹치는 부분이 커서 코로나팬데믹으로 인한 세계시장의 수요·공급 위축으로 인한 결과인지 순수하게 한일 무역 분쟁의 효과인지 분명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일 무역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가장 우려가 되었던 반도체 산업으로 범위를 좁혀서 양국 간 국제수지 변화를 살펴보겠다. 대외 무역 거래 상품을 총괄적으로 구분하는 품목 분류코드(HS Code: Harmonized System Code) 중 4자리 HS코드를 활용하면 반도체 산업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반도체 소자(HS8541)로 다이오드(HS854110), 트랜지스터(HS85412), 사이리스터·다이액·트라이액(HS854130),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와 발광다이오드(HS854140), 그 밖의 반도체 디바이스(HS854150),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HS854160), 그 외 부분품(HS854190) 등을 포함한다.⁷⁴⁾ 두 번째는 반도체 집적회로(HS8542)로 스마트IC칩(HS8542100000), 모노리식집적회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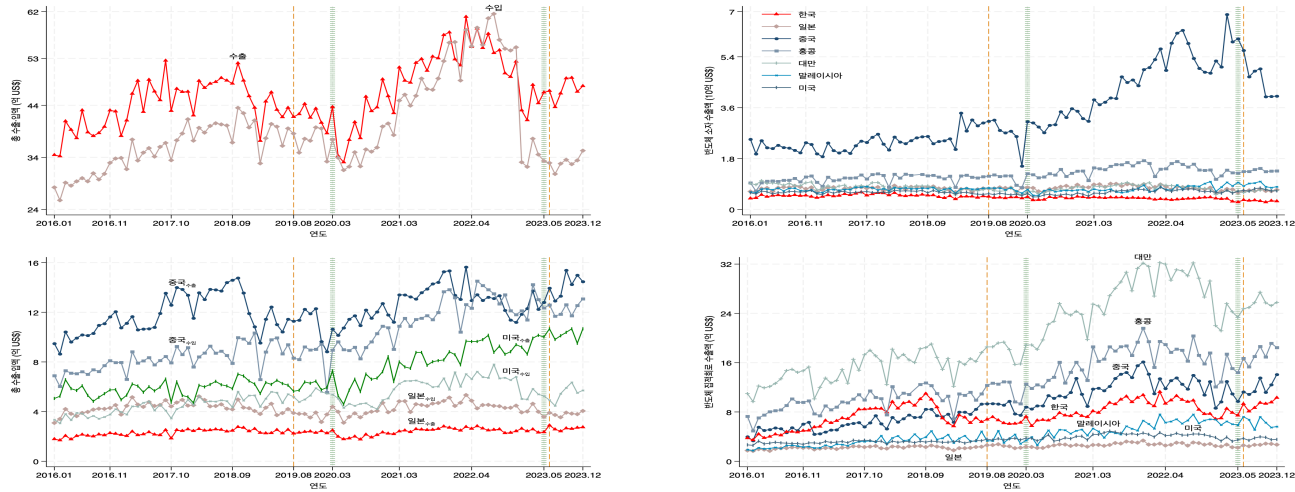
74) HS8541 Diodes, transistors and similar semiconductor devices; photosensitive semiconductor devices, including photovoltaic cells whether or not assembled in modules or made up into panels; light emitting diodes; mounted piezo-electric crystals; HS854110, Diodes, other than photosensitive or light emitting diodes; HS85412, Transistors, other than photosensitive transistors; HS854130, Thyristors, diacs and triacs, other than photosensistive devices; HS854140, Photosensitive semiconductor devices, including photovoltaic cells whether or not assembled in modules or made up into panels; light emitting diodes; HS854150 Other semiconductor devices; HS854160 Mounted piezo-electric crystals; HS854190 Parts.

(HS85422), 하이브리드 집적회로(HS854260000), 전자초소형조립회로(HS854270000), 그 외 부분품(HS854290) 등으로 구성된다⁷⁵⁾. 2019년 7월, 세계시장의 반도체 소자 최대 수출국인 10개국은 중국, 홍콩, 말레이시아, 일본, 대만, 싱가포르, 미국, 독일, 한국, 베트남 순으로 한국의 수출액은 0.05억 달러로 중국의 0.31억 달러보다 약 6.51배 작으며 일본의 0.07억 달러보다는 약 1.40배 작다. 반도체 집적회로의 경우, 최대 수출국인 10개국은 대만, 홍콩, 중국, 싱가포르, 한국, 말레이시아, 미국, 일본, 필리핀, 독일 순으로 한국의 수출액은 1.09억 달러로 대만의 수출액인 1.76억 달러에 비해 약 1.61배 작으며 일본의 0.24억 달러에 비해 약 4.54배 크다. 이러한 통계수치를 종합해 볼 때, 반도체 생산품 중 한국의 주요 수출품은 반도체 소자보다는 반도체 집적회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한일 무역 분쟁이 시작된 2019년 8월 반도체 소자 최대 수출국은 전월과 동일하게 중국 등 10개국으로 구성되며 한국의 반도체 소자 수출액은 싱가포르 감소분인 3.88%와 유사한 3.27% 감소한 반면에 중국, 홍콩, 말레이시아 수출액은 1.89%, 1.80%, 0.91% 증가하였고 일본 반도체 소자 수출액은 0.61% 감소하였다. 반도체 집적회로 최대 수출국 역시 2019년 7월과 동일하게 대만 등 10개국으로 구성되며 한국의 반도체 집적회로 수출액은 0.68억 달러로 전월에 비해 6.18% 증가하였다. 이는 싱가포르의 증가분인 6.59%와 유사한 수준으로 홍콩의 12.56%보다 작지만 대만 5.25%, 중국 0.49%보다 크다. 반면에 미국과 말레이시아 수출액은 각각 25.88%, 0.77% 감소하였다. 이는 한일 무역 분쟁이 한국의 반도체 상품 수출액에는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것을 함의한다.

75) HS8542 Electronic integrated circuits and microassemblies; HS8542100000 Cards incorporating an electronic integrated circuit ("smart" cards); HS85422 Monolithic integrated circuits; HS8542600000 Hybrid integrated circuits; HS8542700000 Electronic microassemblies; HS854290 Parts.

〈그림 3〉 국가별 총 수출입액 및 반도체 소자(HS8541), 반도체 집적회로(HS8452) 수출액



출처: UN Comtrade Database (2016-2023). Trade Data를 이용하여 저자가 직접 작성.

주: 초록색 점선과 주황색 파선은 각각 한일 양국간 무역제재(2019년 8월, 2023년 6월)와 세계보건기구에서 선포한 코로나팬데믹(COVID19, 2020년 3월, 2023년 5월)의 시작점과 해제 점을 의미한다. 대만과 2023년 한국 무역통계는 UN Comtrade에서 제공되지 않으므로 다른 나라의 대만과 한국 수출입액 자료를 활용하였다. 또한 자료에서 'Other Aisa, nes (S19)'를 대만으로 간주하였다.

〈그림 3〉에서 관측되는 것과 같이 반도체 상품 수출액은 한일 무역 분쟁보다는 이전 시기인 2018년 7월에 G2국가인 미국과 중국이 양국의 수입품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시작된 미중 무역 분쟁⁷⁶⁾으로 인한 세계시장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2018년 10월부터 세계시장에서 반도체 가격이 메모리 반도체를 중심으로 크게 감소하였다⁷⁷⁾. 한일 무역 분쟁 이후의 경우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팬데믹을 선언하기 직전인 2020년 2월 반도체 소자와 반도체 집적회로 수출액 모두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세계 경기 둔화로 인한 교역 규모 위축 및 중국의 봉쇄·격리·수시검사로 이루어진 제로 코로나정책(动态清零)으로부터 발생한 중국발 공급망 차질 등에 의한 현상으로 한일 무역 분쟁의 핵심 쟁점인 일본의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수입액 감소가 한국의 반도체 수출액 감소로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앞선 법적 논의에 비하여 한일 무역 분쟁이 양국의 국제수지에 미친 영향은 시간적 추이를 제외하였을 때 그리 크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국제수지 통계자료는 월별로 공개되어 무역 분쟁에 대한 정책적 대응으로 인해 효과가 완화되어 관측되는 경향을 가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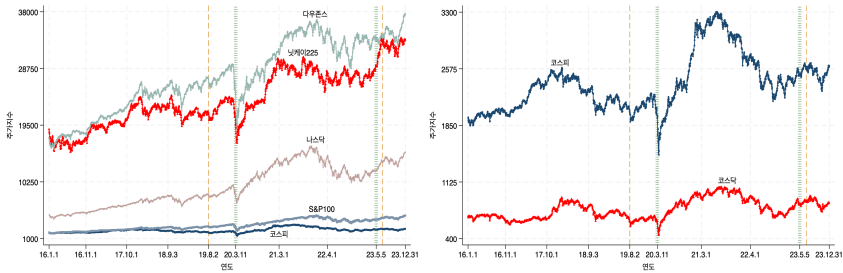
다음으로 한일 무역 분쟁이 증권시장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코스피(KOSPI), 코스닥(KOSDAQ), 닛케이225(日経225N), S&P 100(Standard and Poor's 100), 다우존스(Dow Jones), 나스닥(Nasdaq) 지수의 일별 시계열 추이를 활용하여 〈그림 4〉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앞서 국제수지와 마찬가지로 코로나팬데믹 시기와 맞물려서 한일 무역 분쟁이 국내 증권시장에 미친 영향은 중·장기적으로 유의하게 관찰되지 않는다. 그러나 국내 증권시장 지수인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만으로 제한하여 살펴보면 일본이 한국 수출관리 운용에 대한 재평가를 공고한 2019년 7월 1일과 한국으로의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에 대한 수출을 일반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 대상으로 변경한 당해 7월 4일, 그리고 캐치올제도로의 전환을 시행하면서 한국에 대한 수출지역 구분을

76)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2018). The findings of its exhaustive Section 301 investigation; 国务院关税税则委员会办公室(2018). 对原产于美国500亿美元进口商品加征关税的公告.

77) 산업연구원, “2019년 경제·산업 전망.”, 2018.

Group A에서 제외된 2019년 8월 2일에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의 유의한 하락을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2019년 8월 1일 증가 2,017.34이었던 코스피 지수는 익일 1,998.13으로 하락한 후 9월 5일까지 1,900대에 머물렀다.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로 전일 증가 622.26에서 2019년 8월 2일 615.70, 8월 5일 569.79로 마감한 후 8월 19일까지 500대에 머물렀다. 다시 말해서 한일 무역 분쟁은 증권시장 변동성을 심화시켜 투자심리의 위축을 가져와 주가 하락이 나타났으나 양국 간의 합의로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규제가 단계적으로 완화되면서 회복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 국내외 주가지수의 시계열 추이



출처: 한국거래소·도쿄증권거래소·뉴욕증권거래소(2016~2023). 주가지수 통계를 이용하여 저자가 직접 작성.
 주: 초록색 점선과 주황색 파선은 각각 한일 양국간 무역제재(2019년 8월 2일, 2023년 6월 27일)와 세계보건기구에서 선포한 코로나팬데믹(COVID19, 2020년 3월 11일, 2023년 5월 5일)의 시작점과 해제점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양적 자료에서 기술통계를 근거로 한일 무역 분쟁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 것은 제한적이다. 한일 무역 분쟁의 국제수지에 대한 영향이 유의하지 않게 관측되는 이유는 한일 무역 분쟁이 발생한 시기가 한국과 일본의 무역수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두 나라인 미중 무역 분쟁에 따른 G2 양국 간 관세 인상 및 보복 관세 부과를 비롯하여 코로나팬데믹 시기와 맞물려서 나타난 점에 있다. 또한 국제수지에서 세계화로 인한 글로벌 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 강화로 기술통계로 한일 무역 분쟁이 양국의 국제수지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와 유사하게 증권시장에서도 한일 무역 분쟁이 양국의 주가지수에 장기적으로 미친 영향은 유의하게 관측되지 않

는다. 그러나 한일 무역 분쟁 시점과 종점에 단기적으로 하락 및 상승이 나타남으로써 단기 주가 변동을 가져온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변동은 한일 무역 분쟁이 증권시장에서 불확실성을 초래하였다는 것을 함의한다. 본 연구에서는 제한된 자료로 인하여 증권시장에 대한 효과를 주가지수 시계열 추이를 활용하여 분석하였기 때문에 함의를 도출하는 데 제한적이다. 따라서 후행 연구에서는 세계무역기구의 무역통계에서 전세계 각국의 전체 품목 분류코드 및 월별 시계열 미시자료를 활용한 패널데이터 구축을 통하여 회귀분석 등 보다 구체화된 실증 분석모형 제시와 함께 주식회사 단위로 산업군 식별을 통한 분석으로 한일 무역 분쟁의 국제수지 및 증권시장에 대한 효과를 추정하고자 한다.

IV. 결론

2019년 8월 2일 일본 정부는 2018년 10월 30일과 11월 29일에 한국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강제징용 피해자의 일본 전범기업 신일철주금과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승소를 확정판결을 ‘한일 간 신뢰 관계의 심각한 훼손’으로 공고하고 한국에 대한 수출지역 구분을 격하한 후 한국의 주요 수출 상품 중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 핵심 소재인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의 수출을 제재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일본의 수출제재의 이유인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와 함께 유사한 사례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소송 관련 판례를 분석하고 무역 및 주가지수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실제 양국의 국제수지와 증권시장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승패소는 일관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 노동권⁷⁸⁾ 및 여성 인권 등 국내의 범사회적으로 주목받은 수준에 비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주요쟁점은 여전히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78)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C029 - Forced Labour Convention, 1930 (No. 29) 참고

관한 협정'과 양국 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합의',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7조 '국내법과 조약의 준수', 금반어의 원칙 등에 근거한 국제법상 '국가면제'의 범위에 대한 해석에 있다.⁷⁹⁾ 비록 2018년 심급제도의 최고법원인 대법원에서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 및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위자료청구권은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명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잇따라 하급법원에서 대법원의 판례를 근거하지 않고 국가면제 제한 혹은 허용에 서로 다른 해석을 제시하는 판결이 발생하고 있다.⁸⁰⁾ 예컨대, 2021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의 청구권협정 해석에 대한 소수 의견과 비엔나협약 제27조, 금반언 원칙 등에 의거한 국제법 위반 여부를 근거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각하하였으며⁸¹⁾ 대법원의 판례에 근거해서 배상 결정을 하더라도 일본 정부의 불응으로 인한 채권자의 소송비용에 대한 추심을 다시 한일청구협정, 위안부 합의, 비엔나협약 27조, 금반어원칙 등에 근거한 국제법 위반 가능성으로 불가 결정을 송달하고 채무자에게 송달된 재산명시명령 서류의 반복적 반송으로 인하여 재산명시명령을 취소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관측되고 있다⁸²⁾. 비록 한국의 경우 하급심에서 대법원에서 내린 논지와 다른 판결이 가능하지만 이는 극히 이례적인 사례이다. 따라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에 대한 일관적이지 않은 판결로 소송의 장기화와 승-패소 상황이 뒤집히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서 한일 무역 분쟁이 재차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세계무역기구 무역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일 무역 분쟁은 단기에 수출 규제 대상인 반도체 제조 핵심 소재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에 대한 한국 수입액 및 일본 수출액의 유의한 감소를 가져왔으나 수출금지가 아니라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의 전환이란 점과 국내 보유재고 활용 및 수입처 다변화 등으로 인하여 처음에 야기되었던 우려와는 달리 한국의 반도체 수출

79) 日本外務省, “未来志向の日韓關係を目指して.”, 2016.

80)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판결;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3다67587 판결.

8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30. 선고2015가합13718 판결.

8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15. 선고 2021카명391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11. 선고 2022라730 판결.

액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의 주요 수출품인 반도체 집적회로 수출액의 경우 한일 무역 분쟁이 일어난 2019년 8월 전후보다는 2018년 7월에 시작된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이나 코로나팬데믹으로 인한 세계 시장의 불확실성 증가에 따른 반도체 메모리 가격 하락과 중국발 공급망 축소 위협에 더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관측되었다. 이와 유사하게 증권시장에서도 한일 무역 분쟁 효과가 장기적으로 유의하게 관찰되지는 않지만 단기 주가 변동을 가져와서 증권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비록 한일 무역 분쟁이 양국의 국제수지에 미치는 영향은 월별 국제수지 추이를 살펴보았을 때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증권시장에서의 단기 주가 하락으로 이어져 투자심리 악화를 가져온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무역 분쟁은 한일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사회·외교·안보 관계의 구축과 동북아 정세 안정화에 있어서 부정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한일 무역분쟁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및 일본군 위안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제면제의 범위와 내용에 대한 대법원의 보다 명확한 기준 제시 및 하급법원의 대법원 판례에 근거한 일관성 있는 승·패소 판결이 요구되는 바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전세계 각국의 전체 수출·입 통계 및 주식회사 단위의 주가 자료를 활용한 회귀분석을 통해서 해당 기간 미중 무역 분쟁 및 코로나팬데믹 발생 등의 외생적 변수를 통제한 보다 상세한 양적 연구를 진행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강병근, “국제법적 관점에서 본 일제강제징용 배상판결의 주요쟁점에 관한 연구.” 『저스 티스』 제143호, 2014.
- 강은현, “일제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민사소송법 쟁점의 검토 - 2013다 61381 전원 합의체 판결 및 이후 집행절차의 개략 -.” 『민사소송』 제26권 제1호, 2022.
- 다카야스 유이치, “한일경제관계의 현상 및 대응방안.” 한일경제관계 개선 세미나, 2019. 11. 18.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중·일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GVC 연계성 연구.”, 2020.
- 산업연구원, “2019년 경제·산업 전망.”, 2018.
- 산업통상자원부, “제26차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 전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 2019-154호, 2019.
-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대책.”, 2019.
- 산업통상자원부, “소부장 R&D 고도화 방안.”, 2019.
-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장비 2.0전략.”, 2020.
- 산업통상자원부, “소부장 미래선도품목 R&D 추진방안.”, 2021.
- 산업통상자원부, “제31차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 전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 2023-74호, 2023.
- 산업통상자원부, “(설명자료) WTO 분쟁해결절차 중단은 한일 수출규제 현안 원상회복 논의 전제로 취한 잠정조치로 수출규제 해소 前 철회가 아님.”, 2023.
- 서하림, “일제 강제징용 배상에 관한 대법원 판결과 한일 청구권 협정의 해석 -조약의 해석 원칙을 중심으로-.” 『법학논집』 제29권 제2호, 2024.
- 정구태·김어진,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와 소멸시효-대법원 2018.10.30. 선고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을 계기로-.” 『법학논총』 제25 권 제3호, 2018.
- 최혜린, “한일무역분쟁의 게임이론적 분석.” 『무역학회지』 제46권 제5호, 2021.
- 한국무역협회, “한중일 소부장 의존도 심화… 대체 공급망 형성 어려워: 한중일 소부장 의존도 심화… 대체 공급망 형성 어려워 - 수입 이유는 중국 ‘저렴한 가격’·일본 ‘국내 미생산·고품질’.”, 2021.
- “강제징용 뒤집은 판사 “日에 위안부 소송비 추심 못한다” 항고도 각하.” 『서울신문』 2021.06.18.
- “미뤄진 ‘강제동원’ 미쓰비시 국내 자산 현금화…대법원, 결정 못 내나·안 내나.” 『경향신문』 2022. 8. 19.

-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대책.”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19.
- “위안부 피해자 뜻대로 화해·치유재단 해산.” 『경향신문』 2018. 11. 21.
- “윤 대통령 “한일, ‘제로섬’ 관계 아냐…함께 더 많이 얻는 ‘윈-윈’ 될 수 있어.”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3.
- “일본 수출규제 2년…소부장 핵심품목 대일 의존도 크게 낮아져.”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1.
- “지소미아 관련 김유근 NSC 사무처장 정부 발표문.”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19.
- “특명! 기술독립 선봉장 ‘소부장’ 자립.”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2.
- “한-일 수출규제 현안 관련.”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3.
- “화해치유재단 2년 4개월 만에 ‘해산’ 결정.” 『KTV 국민방송』 2018. 11. 21.
- “확실한 ‘소·부장’ 자립으로 흔들리지 않는 산업강국 실현한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0.
- “2023년 정부 출자기관 배당금 1조 2,387억원 확정.”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3.
- “[단독] 법원 “일본제철 국내 주식 강제 매각해 징용 피해자에 배상하라” [법조 Zoom In].” 『동아일보』 2021. 12. 30.
- “[판결] 위안부 피해자들, '뒤에 소송비용 추심 불가' 법원 결정에 항고했지만 '각하'.” 『법률신문』 2021. 6. 18.
- United Nations, *UN Comtrade Database*, <https://comtradeplus.un.org.n.d>.
- “A trade dispute between Japan and South Korea has Trumpian echoes.” *The Economist*, 2019. 7. 18.
- “Japanese trade restrictions place clamps on South Korean economy.” *NHK*, 2019. 7. 2.
- “Seoul lobbies wartime forced labour victims to drop Japan claims.” *Financial Times*, 2019. 11. 28.
- “South Korea and Japan trade dispute could lead to ‘dire consequences,’ official warns.” *ABC News*, 2019. 7. 18.
- “South Korea and Japan’s feud explained.” *BBC*, 2019. 12. 1.
- “South Korea, Japan Strike Calmer Note After Months of Tension.” *Bloomberg*, 2019. 8. 14.
- “South Korea-Japan trade fight risks ‘further escalation.’ *CNBC*, 2019. 7. 17.
- 日本経済新聞, “元徴用工訴訟、賠償命令4社に 日本政府「協定に違反」.”, 2024. 1. 25.
- 日本外務省, “未来志向の日韓関係を目指して.”, 2016.

- 日本経済産業省, “日本産半導体製造装置の輸入は減少、半導体主要材料2品目は増加(韓国).”, 2019.
- 日本経済産業省, “輸出貿易管理令の運用について」等の一部を改正する通達について.”(平成17・02・23貿局第6号輸出注意. 事項17第9号), 2019.
- 日本経済産業省, “2019年は韓国への輸出が大幅に低下. その要因とは?”, 2020.
- 日本経済産業省, “輸出管理内部規程の届出等について.”, 2022.
- 日本経済産業省, “韓国向け輸出管理の運用の見直し.”, 2023.
- 日本経済産業省, “補完的輸出規制(キャッチオール規制).”, n.d.
- 日本外務省, “大韓民国大法院による日本企業に対する判決確定について(外務大臣談話)(平成30年10月30日).”, 2018.
- 日本貿易振興機構, “韓国向け消費財輸出は回復へ.”, 2023.
- 統計で見る日本, <https://www.e-stat.go.jp>. n.d.

Abstract

What led to the 2019 Korea-Japan Trade Dispute?
Judicial Cases of Japan's Wartime Forced Labor

Jihye Kam(Assistant Professor, Sungshin Women's University)

Japanese export controls on hydrogen fluoride, photoresists, and fluorinated polyimides, used in semiconductor and display manufacturing, took effect in August 2019. Prompted by the Supreme Court's ruling on compensation for Japan's wartime forced laborers, South Korea became the only country removed from Japan's white list, which exempts exports from additional screening procedures. This decision triggered the Korea-Japan trade dispute, which lasted until June 2023. To investigate the legal causes and economic consequences of the dispute, this study reviews cases of Japan's wartime forced labor and comfort women, examines trade balance trends, and analyzes stock market indices in both countries before and after the dispute, with particular emphasis on the semiconductor industry. Lawsuits filed by forced laborers, similar to those involving comfort women, have resulted in inconsistent court decisions, primarily due to varying judicial interpretations of 'state sovereign immunity' among judges, rather than adherence to Supreme Court rulings. This inconsistency could lead to further trade disputes in the near future. Although the significant decline in imports of hydrogen fluoride, photoresists, and fluorinated polyimides from Japan has had minimal impact on South Korea's semiconductor exports, it has caused short-term volatility in the stock market. The findings suggest that lower courts should issue coherent rulings based on clear Supreme Court guidelines on the interpretation of state sovereign immunity to strengthen Korea-Japan relations.

Keywords: Korea-Japan Trade Dispute, Court Decision on Japan's Wartime Forced Labor, Whitelist, Japan's Export Controls, 1965 Korea-Japan Treaty

투고일: 2024년 12월 30일, 심사일: 2025년 1월 25일, 게재확정일: 2025년 2월 23일